

**「2026년 강원 앵커사업 [미래모빌리티 분과],
2026년 미래모빌리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**

강원특별자치도 앵커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**2026년 미래모빌리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**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
원주미래산업진흥원 원장

필독 사항

-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앵커(ANCHOR)사업 운영 및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함

-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10%(현금 100%) 이상 필수
- 사업비는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, 시험인증비 등 직접 수행비를 중점적으로 편성
- 자산확보성 구매(기계장비, 단순 제조·시험·측정 장비, 컴퓨터, 3D 프린터, 차량, 범용 소프트웨어 등 사업 종료 후에도 유형자산으로 사용가능하며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장비) 불가
-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해외출장(박람회 참가 등) 불가
- 인건비성 비용(개발비, 제작비, 노무비 등)은 불인정
- 금형제작, 장비 및 SW 임대비 등 편성 지양

-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을 통한 “사업화” 가능성이 높은 과제 지원
- **사업비**는 기업에서 선집행을 통한 사업추진 후 결과평가 및 정산에 따른 **후지급**
-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 가능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**사업비 유용**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**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**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- [붙임 2]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
1.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도내 미래모빌리티 산업분야 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성장 가속화 도모
- **사업명:** 2026년 미래모빌리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
- **모집기간:** 2026. 8. 18.(화) ~ 8. 31.(월)
- **지원내용:**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지원(제품화, 샘플 제작 등)
- **지원대상:**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 및 미래차 전환 관련 기업
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강원도내 본사 또는 공장(연구소) 보유기업

〈지원 제외대상〉

- 서류 미비, 허위사실 제출 등이 발견되는 경우
- 과제 중복성에 해당하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- 신청일 현재 휴·폐업 중인 기업
- 기타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

2. 지원내용

- **지원규모:** 총 4개사 내외
- **지원범위 및 내용**

세부실행과제	지원내용		건수 (건)	지원금 (백만원)
기술사업화	제품개발	• 제품 개발 지원 - 기존 제품 일부 개선/업그레이드 개발 • 시험성능 평가분석비 지원 - 개발품 성능평가 분석비 지원	3	기업당 최대 20
	지식재산권	• 지식재산권 등록비 지원 - 특허 출원, 실용실안, 디자인 등록 등 - 개발 관련 논문 게재		
	홍보 마케팅	• 홍보물 제작 지원 -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		
	기술가치평가	• 기술가치 평가보고서 지원 - 공공기술 및 기업보유 기술 가치 객관적 산정 - 기술분석(기술특성, 경쟁력), 시장분석 보고서 - 기술가치 산정, 핵심기술 요약, 사업화 가능성		
	기술료	• 공공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* 2026년 1월 이후 기술이전 계약서 필수 제출		
SW 개발	SW개발	• SW 개발 및 업그레이드 지원 * 앵커 사업연계 必 (25% 이상)	1	40

※ 최대 지원 예산 이내 동시 선택지원 가능(예: 제품개발 1,800+지식재산권 지원 200)

○ 지원기준

- 지원금은 최종 결과평가 이후 **결과 및 증빙에 따른 후정산**
- 기업부담금: 지원금의 **10%이상** 부담 * 부담금 현금 100% (현물 불인정)

구분	총사업비(가)	지원금(나)	민간부담금(다)
구성 기준	(나)+(다)	선정금액	(나)의 10% 이상
(예시)	22,000,000	20,000,000	2,000,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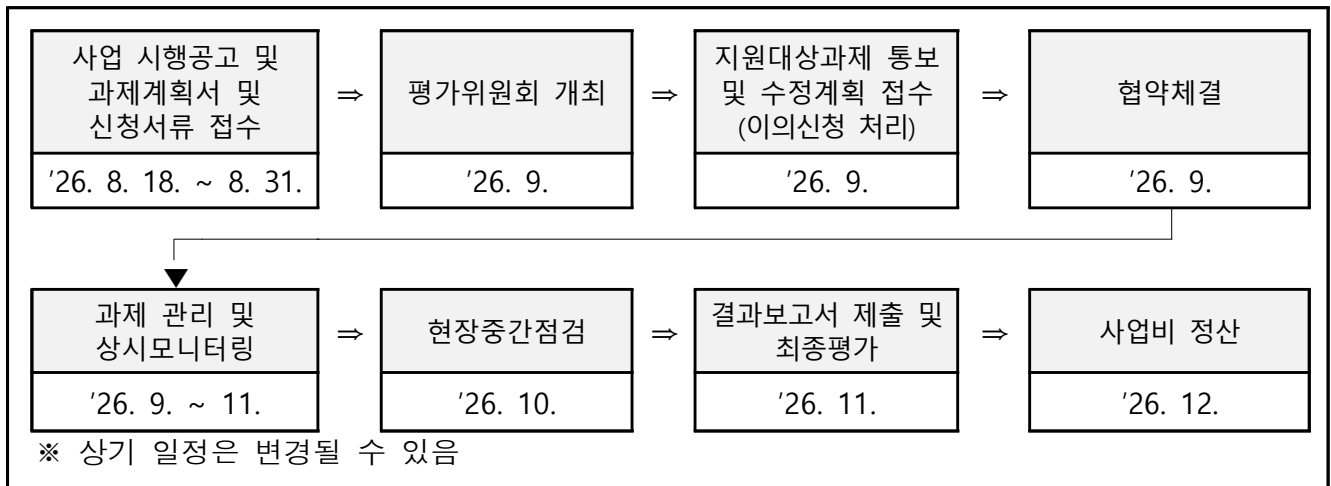
※ 부가가치세 발생 시 선정기업이 부담

○ 수행기간: 2026. 9. ~ 11. (3개월)

○ 지원요건

-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주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한 법인기업
-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6개월 이상 납세 등 도내 업력이 있는 기업
- 미래모빌리티산업 유관 전·후방(예비) 기업
- 지원제외대상*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(*세부사항 불임2 참조)

○ 지원절차 및 일정(안)



3. 선정평가

○ **평가일자:** 예정 2026. 9. 4.(금) (세부 일시 및 장소는 접수자 대상 별도 안내)

○ **평가방법:**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(PPT발표)를 통해 선정

○ **선정평가위원회 구성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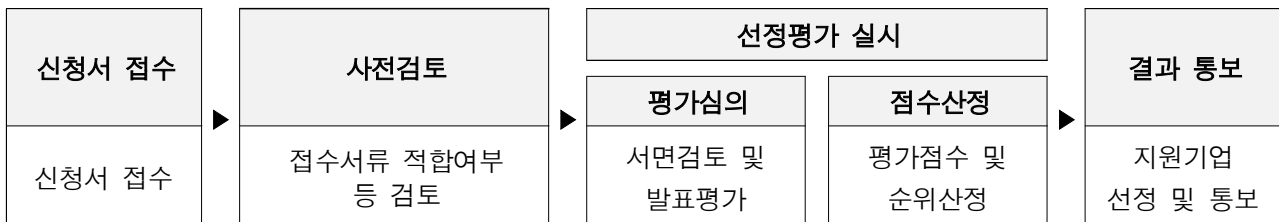
- 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은 **비공개**를 원칙으로 함
- 선정위원회는 산업·연구계·관련학과 전문가 등 **관련 분야 대표성**을 갖춘 자로 구성

〈평가위원 선정〉

- 고유번호(1~43)를 부여한 예비위원명부 작성 후 봉인 및 보안유지
- 감독관 입회하에 43명 중 추첨을 통한 21명 예비명부 작성
-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21명 중 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
- 추첨은 제출 접수 순으로하며 추첨된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에 대하여 개별연락을 통해 평가위원회 개최 통지
- 평가위원 사정에 의해 참여불가 시 차순위 평가위원 연락 후 평가위원회 최종 구성

구 분	예비위원 고유번호 작성	고유번호 추첨 및 확인	개 봉
평가위원 구성일정	2026. 8. 18.(화)	2026. 8. 31.(월)	2026. 8. 31.(월)
책임자	엄정민	임성민	엄정민

○ **선정절차**



- (1단계)서류심사: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

- 서류심사는 기업의 지원조건 충족 여부, 필수제출서류 누락여부, 재무 건전성 등의 지표로 **합격, 불합격**으로만 판단

1.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
2. 신청자격 검토
 - 1)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
 - 2) 기지원 과제와의 중복성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활용)
 - 3)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
 - 4) 참여 제한 여부
 - 5)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
 - 6) 기타 공고에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기준 및 신청자격 관련 사항 등

- (2단계)선정평가: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PPT 발표평가 심사
 - 서류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실시하며, 5인의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운용
 - 발표자는 사업책임기술자(PM) 포함 3인 이내로 하며, 업체당 35분(발표 15분, 질의응답 20분) 이내로 진행
 - 발표자 및 배석인원은 평가 서약서를 작성하고 운영방침에 따름-
 -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발표내용을 평가표에 따라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·평가하며,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의 기업을 고득점순으로 선정
 -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,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삭하여 점수 산출

$$\text{종합평점} = \frac{\text{평가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 + \text{가점} - \text{감점}$$

- 평가평균 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하여 최종 점수 확정
- 동점자 처리기준
 - 과제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① 정량평가점수 ② 기업역량 ③ 사업추진계획 ④ 기대효과 ⑤ 가점 순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함
 - 위의 사항이 동일한 경우 선정위원회를 재개최하여 따로 선정함
- 선정평가 행정상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, 선정 대상자의 모든 평가요소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재평가가 검토됨
- 평가결과심의: 평가절차 및 결과의 타당성 등 내부심의를 거쳐 선정 대상 과제 확정
- 최종선정공고: 평가위원 지적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진행 후 사업추진
-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할 수 있음

○ 평가지표: 불임서류 참조

4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6. 8. 18.(화) ~ 8. 31.(월)까지
- 신청방법: 계획서 및 첨부서류 담당자 e-mail 일괄 접수

< 제출처 >

e-mail: wfijm@wfi.or.kr

문의처: 033-764-3187

※ 직접방문(오프라인 접수) 접수 불가

○ 제출서류

구분	서 식 명	제출 형태
계획서	과제계획서 (계획서 70쪽 이내, 요약본 3쪽 이내, 제출서식 참조) ※ 반드시 직인 날인 하여 제출	한글(HWP)/ 스캔(PDF) 파일 제출
	발표자료 PPT 및 PDF (발표시간 15분 기준, PPT의 경우 폰트 문제 고려)	
적격여부 확인서류 [필수]	사업자등록증(명), 법인등기부등본, 중소기업확인서	
	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 ※ 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, 재무건전성, R&D 투자실적 등 확인	
	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※ 공고기간 이후 증명서만 유효	
	개인정보 제공·수집·이용 동의서	
	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[사업계획서 붙임]	
	유사과제 검색결과 확인서(NTIS), 중복과제 확인서약서	
제출서류 [해당시]	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중앙정부 또는 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 현황	
	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
	품질·제조 인증 및 인정 서류	
	국내·외 관련 특허 등록증	
	국내·외 관련 논문 및 기술 관련 증빙	
	R&D 전담 증빙(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, 전담부서(인력) 비중 증빙)	
	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	

※ 증빙 제출서류만 선정평가 점수에 반영

5. 유의사항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
- 신청서, 첨부서류를 모두 **온라인**으로 접수
-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비롯한 첨부서류 전체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, **마감시간 이후 접수문서는 불인정**
- 회원가입,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하루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~3일전 과제가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등록 권장
-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보유기간(선정 후 5년간) 이후 파기 예정
- 지원제외 대상 목록 확인 필수
-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 시 선정 취소 및 협약 취소가 될 수 있음
- 선정평가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되며 평가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녹취, 영상 촬영 등을 할 수 없음
- 선정평가에 의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절차 상 중대한 결격 사유 발생 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운영되며, 평가위원의 정성적인 평가 사항에 대한 이의 및 단순 평가 결과 불복 등은 수용되지 않음 (정성평가의 세부근거를 별도 요청할 수 없음)
-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- 사업비는 협약시 수정보완되어 제출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며 **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, 「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, 「원주시 공공기관의 출연금,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」**에 맞도록 사용 관리되어야 함
- 사업비는 다른 자금과는 **별도 통장**으로 관리하여야 함
- 사업 수행도중 사업비목의 임의 변경 및 사용, 원주시 및 전담기관(원주미래산업진흥원)의 지적 및 주의사항 미반영 등에 대한 문제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행기업에서 부담하며, 사업정지, 사업비 불인정·환수 및 제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- 선정기업 정산 전 외부 회계사무소의 **회계감사보고서** 제출 *요율 붙임 참조
- 사업비는 결과평가 이후 정산에 따른 후지급

○ 후속관리

- 사업계획서와 사업 결과평가 및 성과에 따라 **후속 연계사업**(원주미래산업진흥원 미래 모빌리티 유관 지원사업 등) **신청시 우대** *결과평가 우수(80점) 이상 시 가점 부여
- 동일한 사업을 연속해서 수행할 수 없음(ex. '25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, '26년 기술사업화 지원사업)
- 과제 종료 후 **5년간 매년 12월 말**에 성과활용 실적이 포함된 '**성과활용보고서**'를 제출하여야 함 (연구개발 후속 실적, 매출 증가 실적, 지식재산권, 고용실적 등)
 - * 수행종료 첫 해는 해당하지 않음
-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(논문, 특허 등)는 '강원 앵커사업' 및 '원주시, 원주미래산업진흥원'에서 지원하는 **사업의 성과임을 표시**하여야 함

6. 문의처

○ 문의처: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모빌리티산업부

구분	담당자
이름	엄정민 대리
이메일	wfirm@wfi.or.kr
연락처	문의처: 033-764-3187

* 사업비 편성 및 변경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가능한 e-mail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[붙임 1] 선정평가표

○ 선정평가표(안)

영역		평가 주안점	배점
정량 지표 (30)	기업 역량	• 모빌리티 유관 산업 추진 업력 • 기업신용평가 등급 • 매출액 및 부채율 • 미래모빌리티 산업 관련 품질 제조 인증 보유 ※ ISO 9001, 14001, JATF 16949, 45001, 50001, CE, KC, KS 등 ※ 필수서류: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최근 3년간), 과제계획서, 품질·제조 인증서	15
	기술 역량	• 유사 정부사업 및 지원사업 참여 이력(최근 3년간) • 기술 관련 인증서 보유현황 ※ 이노비즈, 메인비즈, 벤처기업, 기업부설연구소, 신기술 인증(NET) 등 • 지식재산권 보유(특허, 실용신안 등) * 등록사항만 해당 • 기타 기술 입증 서류 ※ 필수서류: 국내외 특허(등록), 실용신안, SW 등록, 제품 기술 관련 최근 5년간 국제논문(참여 인력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) 등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	15
정성 지표 (70)	사업 수행 의지	• 기업의 기술사업화 또는 SW개발 사업 참여 의지 • 기업의 지원사업 수행 준비도 • 발표 및 질의응답 태도	20
	사업 계획 적정성	• 기술사업화 또는 SW개발 최종목표의 적정성 • 정량적목표(KPI) 및 수행 방향, 검증 방법 등의 적정성 • 사업추진 일정 적정성 • 예산편성 적정성	30
	사업화 가능성	• 개발 제품에 대한 시장분석 • 제시된 기술의 기술성숙도 (사업화 가능 단계) • 사업화에 대한 준비(기술개발정도, 제품제작능력, 수익모델 등) • 제품의 효율적인 유통 방법과 판매처 확보계획의 구체성	20

○ 우대가점 및 감점

구분	우대 및 감점 기준	배점
가점	① 원주미래산업진흥원 모빌리티산업부 기 수행사업(3년 이내) 결과평가 점수 80점 이상 우수기업	2점
감점	① 기 추진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(성실수행)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총괄 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평가결과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	-2점
	② 최근 3년 이내(접수마감일 기준)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(정당한 포기 사유가 있을 시)	-1점
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
[붙임 2] 지원제외 대상

① 접수서류

- 과제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
☞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

② 중복성 검토

-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확인하며, 주관 연구책임자에게 중복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
- 연구자는 NTIS(www.ntis.go.kr)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(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포함)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 요망

※ 유사과제 검색 방법 : www.ntis.go.kr 로그인 → 과제참여 → 유사과제 → 유사성 검토

- 원주미래산업진흥원, 강원테크노파크 등 기관 지원사업 중복 자체 검토(중복 과제 확인 서약서 제출)
- 신청한 연구개발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관 지원과제(미산진 포함)와 중복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③ 신용 및 기업상태

- 기업이 부도·화의·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는 경우 예외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※ 채납 · 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
<관련 문의처>

- 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→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☎1600-5500)
- 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
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 - *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3년치를 제출
-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(과제책임자 및 기업체) 또는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 및 협약 해지 조치

④ 기타 사업목적 등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 - ※ 접수 마감일 이전 체불 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-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기업의 대표이사, 과제책임자가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
 - 기업이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중인 경우
 -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따라 '채무 불이행자 명부'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'채무 불이행자'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, 회생, 면책권자 등 신용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
 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의견'인 경우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 -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, 과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.